
2021년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舊 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안내서

2021.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목 차

I. 사업 개요	1
II. 지원내용 및 조건	4
III. 과제 신청 및 접수	9
IV. 과제 선정 방안	11
V. 사업관리 방안	17
VI. 기타 유의사항	18

□ 추진배경

- 기업의 SW생산성·제품품질 향상 및 글로벌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SW공학기술 도입 및 내재화 필요
- 신SW산업의 발전과 SW의 적용분야 확대에 따라 SW공학기술의 선도적 적용으로 관련 기술과 서비스 경쟁력 확보 가능성 제기
- 글로벌 산업표준, 고객사 규격요건 강화 등에 따라 글로벌 SW표준 및 고신뢰 SW기술에 대한 적용 사례 확보 및 전파 필요

□ 추진방향

- SW시장 변화에 따라 SW공학기술 적용사례의 보급·확산을 위한 대상 산업군 확대와 기술 역량 내재화 체계 개선
- SW공학 및 SW안전기술 적용 선도사례, 우수사례 등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한 사회적 가치 제고 강화
- 수행기업 주도 사업수행 체계 구축 및 신성장동력 창출 등 비즈니스 가치와 SW공학과의 연계 가시화*

* 수행기업 상황에 따라 적합한 SW공학기술을 적용하고 전체 수행과정에서 비즈니스 관점(비즈니스 이슈해결, 기업 경쟁력, 신사업 창출)의 연계성 제시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 현안을 SW공학 및 SW안전 기술 도입·적용·내재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SW품질경쟁력을 강화

□ 관련 규정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2021년 2월 17일 개정) 및 관련 지침

□ 추진 체계 및 역할



구 분	주요 역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전담 및 수행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 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범위, 예산 등 최종 조정 및 확정 등 ○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
과제평가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선정평가 등
위탁기관 (컨소시엄) (수행기업(주관기관) / 컨설팅기관(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과제 진행 및 현황·결과 보고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사업 추진절차

준비 단계	사업계획 수립	'21.1월	■ 예산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사업계획 공고	'21.2월	■ NIPA 홈페이지 등 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21.3월	■ 사업설명회 개최 (필요 시)
지원 과제 선정 및 통보	↓		
	접수	'21.3월	■ 전산접수(NIPA 홈페이지)
	↓		
	선정평가	'21.3월~4월	■ 신청서류 검토 (적합성 및 사업비 검토, NIPA) ■ 서면평가,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현장 확인(필요 시, NIPA/외부전문가)
	↓		
	확정·통보	'21.4월	■ 사업비 검토·조정을 통한 과제 및 예산 확정 ■ 위탁기관에 선정 결과 통보
과제 수행	↓		
	협약 체결	'21.5월	■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 지급 (분할 지급)
	↓		
	과제 수행	~ '21.11월	■ 수행계획에 따른 과제 수행 ■ 성과발표회, 전시회 참여 등 성과 활용 관련 협조
	↓		
	진도관리	수시	■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비 집행 내역 점검 ■ HW·SW 적정성 검토
	↓		
	중간보고	'21.7월~9월	■ 과제 추진현황 중간보고
↓			
최종 결과보고	'21.12월	■ 최종 결과보고서 등 제출	
↓			
최종평가	'21.12월	■ 최종평가(과제평가위원회)	
사후 관리	↓		
	사업비 정산	'22.1월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성과 관리	종료 후 5년간	■ 과제결과 성과(실적) 제출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지원사업 개요

구분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방식	자유공모
공모분야	①신성장동력 분야, ②시스템SW 분야, ③경쟁력강화 분야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2.11.30. (최대 2년) (1차년도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예산 및 규모	(1차년도) 28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지원조건	총사업비의 75%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25% 이상)
지원내용	기업의 당면한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SW공학 및 SW안전기술 도입 및 적용, 내재화 비용 지원

나. 세부 내용

공모방식 : 자유공모

공모분야 : ①신성장동력 분야, ②시스템SW 분야, ③경쟁력강화 분야

공모분야	과제 제안 요건	주요 선정 기준
신성장 동력 분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SW신기술과 SW공학기술의 혁신적 도입	(선도적용 파급효과) SW공학기술 도입의 혁신성과 도입에 따른 산업계 등 파급효과
시스템SW 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위해 SW공학 및 SW안전 기술 적용	(기업성장 및 보급효과) SW공학기술 도입을 통한 기업의 성장 효과 및 SW안전가이드 활용 효과
경쟁력 강화(일반) 분야	기업의 당면 이슈 해결 및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해 SW공학 기술 적용	(비즈니스 성과) 비즈니스 이슈와 도입 예정인 SW공학기술의 적절성과 문제 해결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 지원 대상

○ 국내 중소기업(수행기업)과 컨설팅기관 간 컨소시엄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
- 컨설팅기관 : SW공학 전문역량 및 컨설팅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으로 대학, 연구기관, 전문컨설팅 기업 등을 말함

※ 수행기업과 컨설팅기관은 총 1건만 신청 가능 (분야별 복수 지원 불가)

□ 지원 기간 : 협약체결일 ~ 2022.11.30. (최대 2년)

※ 1차년도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 ~ 2021.11.30.

※ 2차년도 사업 기간 : 2022.1.1. ~ 2022.11.30.

※ 1차년도 사업 수행 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1차년도 지원 예산 및 규모 : 28억원 내외 (20개 과제 내외)

공모분야	선정과제 수	세부 공모분야	분야별 선정기준
신성장 동력 분야	7개 내외 (연간 최대 1.5억)	- AI - 빅데이터 - 클라우드 - VR/AR - 블록체인	- 분야 내에서 평가 점수순으로 선정 하되 세부 공모분야별로 최대 2개 과제 선정 - 과제 특성에 따라 필요시 SW안전 가이드 적용 권고
시스템SW 분야	8개 내외 (연간 최대 1.5억)	- 자동차 - 철도 - 항공 - 의료 - 제조 / 기계 - 산업일반	- 분야 내에서 평가 점수순으로 선정 하되 세부 공모분야별로 최대 2개 과제 선정 - SW안전가이드 적용* 필수 * www.sw-safety.co.kr
경쟁력 강화(일반) 분야	5개 내외 (연간 최대 1.5억)	- 없음	- 세부 공모분야 구분 없음

※ 1차년도 사업비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컨소시엄별 차등지급될 수 있음

※ 2차년도 사업비 지원규모는 지원사업 기본계획의 변경, 예산확보 규모, 1차년도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 검토·조정위원회의 검토 결과에 따라 과제의 범위 및 사업비 등이 최종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조건

- (민간 매칭) 사업에 참여하는 컨소시엄은 총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부담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 정부출연금 : 위탁기관(컨소시엄)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 민간부담금 : 위탁기관(컨소시엄)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총사업비 내 민간부담금 비중은 수행기업 유형에 상관없이 25% 이상 유지 (민간부담금은 수행기업에서 부담)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비율은 제한 없음 (현물만으로 구성 가능)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 내 수행기업과 컨설팅 기관 간 사업비는 50:50 비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
 - ※ (예시) 수행기업(민간부담금(총사업비의 25%) + 정부출연금(총사업비의 25%)) : 컨설팅 기관(정부출연금(총사업비의 50%))
- (SP인증) SP인증 신청 가산점을 받은 수행기업은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18개월 이내에 SP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 ※ 해당 수행기업은 협약 시 SP인증 심사비용(일천만원)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기간 : 1차년도 사업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개월+60일)을 협약 시 제출해야 함
- (SW공학수준조사) 수행기업은 사업 착수시점과 종료시점, 사업종료 후 5년간 SW공학수준조사에 참여해야 함
- (성과 확산) SW공학 적용사례의 성과 확산을 위해 위탁기관은 정보통신 산업진흥원에 적극 협조해야 함 (컨퍼런스, 워크숍, 세미나, 인터뷰 등)
- (결과물 활용) 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구축 장비, 시설 및 시제품, 지적 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모든 유·무형적 결과물은 위탁기관이 소유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에 대해서는 일부 공개될 수 있음
 - ※ 공개되는 내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전 상호 협의함
- (사업비 집행)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서버 등 장비 구입에 앞서 민간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도입을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기술료) 해당사항 없음

□ 지원 내용

- 당면한 비즈니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SW공학·안전기술의 도입과 적용, 내재화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 (최대 2년)
 - * (1차년도) SW공학·안전 기술 도입·적용 → (2차년도) 개선 및 내재화를 지원
 - * 사업 신청 시, 1·2차년도 사업계획을 전부 제출해야 함
- (1차년도) 현황분석을 통한 문제식별, SW공학·안전 기술 도입, 시범 적용을 통한 개선사항 도출 등을 수행
 - (현황분석) SW개발·품질체계와 환경(도구 포함) 등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비즈니스 현안이 되는 주요 문제를 식별
 - (도입/적용) 식별된 문제해결을 위해 SW공학·안전 기술을 도입 (교육, 도구, 가이드 등 포함)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개선사항 도출) SW공학·안전기술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사항 도출
- (2차년도) 1차년도 시범사업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 활동과 내재화를 추진하며, 전체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
 - * 1차년도 최종보고서 제출 시, 2차년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재제출해야 함
 - (개선) 1차년도 시범사업 결과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활동을 통해 SW개발·품질체계의 재정립 추진
 - (내재화) 수행기업의 SW공학 및 안전 기술적용 사업의 확대 및 내재화를 위한 활동 추진
 - (성과분석) 1·2차년도 SW공학·안전 기술 적용 성과에 대한 분석

□ 지원 제외 대상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
- 과제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과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과제와 동시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사전 지원 제외 대상 및 사후관리 대상

구분	사전 지원 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p>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공모 : 탈락처리 - 자유공모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지원과제로 확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시 해당기업 또는 해당자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 - 재심사 결과 "사전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된 경우, 현장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안내

○ 사업계획(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NIPA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 '21년 SW공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사업 신규과제 모집공고 → '21년 SW공학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 전산 접수 마감시한 : **2021. 3. 24(수) 15:00 까지**

* 전산 접수 마감시한일 20일 전부터 전산접수 가능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하단(기관 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성과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안내

<사업계획(신청)서 전산 접수 시 유의사항>

- 사업계획(신청)서 접수 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위탁기관(수행기업)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전산 접수를 통해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며, 입력내용은 사업계획(신청)서와 동일하게 작성
- 전산 접수 이전에 반드시 신청 절차 및 사업 안내 등을 숙지하시고 전산입력 화면에 있는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안내에 따라 전산 접수 진행
- 전산 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제출 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 '제출'이 되어야 마무리되며 최종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가 완료되지 않음
(*반드시 별첨의 "전산 접수 매뉴얼"을 숙지)

※ 마감시한 이후엔 접수가 불가하며, 마감시한에 접수가 집중될 경우 접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마감 1~2일 전까지 접수완료 요망

※ 전산 시스템 문의 : ☎ 070-5151-8239

-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마감일 7일전~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면서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 시스템 입력요령 >

- ① 입력 내용이 자동 저장되지 않으므로 내용 작성 중 수시로 “저장” 버튼을 클릭
- ②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매 저장 후 반드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대비 (제출버튼 클릭 후 제출하겠냐는 팝업창까지 다시 클릭해야 제출됨)
- ③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 ④ 마감시간 경과 후에는 “제출” 불가
- ※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하는 경우,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제출에 실패할 수 있음
- ※ 신청페이지에서는 “제출” 버튼을 클릭하였더라도, SMART 시스템 상에 최종 제출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제출로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의 ‘과제 지원 시 제출서류 목록’ 참조

-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전산접수 함 (원본대조필 불필요)
- ※ 제출서류는 먼저 각 주관/참여기관별로 ZIP 파일로 압축한 후 모든 기관의 자료를 한번 더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 ※ **필수 제출서류 일부라도 누락 시 사전지원 제외 조치**
- ※ 위 제출서류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기관)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	담당자 (이메일)	TEL
지원사업 내용	SW공학기술팀 김민수 수석 (kms@nipa.kr)	043-931-5470
SW안전가이드	SW공학기술팀 김동하 수석 (donghakim@nipa.kr)	043-931-5472
SP인증 및 SW품질체계 지원 서비스	SW공학기술팀 김승권 수석 (sgkim@nipa.kr)	043-931-5461
전산접수	스마트시스템 유지보수팀 (smart@nipa.kr)	070-5151-8239

1

선정 절차

- 사업계획(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검토, 과제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발표 평가, 사업비 검토·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선정 절차 개요 >

선정 절차		주체	내용	비고
1단계	적합성 검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신청서류 및 지원 자격조건 검토	평가 대상 결정
2단계	서면평가	과제평가위원회	○ 각 분야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발표평가 대상 선정
	발표평가	과제평가위원회		종합심의 대상 확정
3단계	종합심의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심의 및 지원과제 확정	최종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정

- * 평가 및 사업비 검토·조정 결과에 따라 지원과제 수와 과제별 예산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에라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 조건 미달 시, 과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 적합성 검토

- (개요)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지원 자격조건에 대한 적합성 검토
- (평가대상) 접수과제
- (검토방법) 사업계획(신청)서, 첨부·제출 서류 검토 및 참여제한 여부 확인 등 NIPA 내부검토
- (검토항목) 신청서류, 사업비 산정, 참여제한(사전지원 제외 대상, 조달청 참여제한 기업), 중복성 등과 관련 규정 준수 여부 검토

- * 적합성 검토 결과, 중대 문제(사전지원 제외 대상, 제출서류 미제출 등) 발견 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면평가

- (개요)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1차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 대상과제 선정 (* 접수된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는 생략될 수 있음)
- (평가대상) 적합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 서면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지원효과, 수행역량, 사회적 가치 창출 등 평가
 - * 동점자 발생 시 평가분류와 평가항목 상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순위 확정
 - * 위 기준 적용 후에도 순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동점자에 한해 추가 과제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개요)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 우선순위 선정 (고득점 순)
- (평가대상)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
 - * 서면평가 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각 세부공모 분야별로 최종 지원대상 수의 2배수 이내)
- (평가방법) 총괄책임자 발표 등을 통해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 발표평가 결과는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총괄책임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
- (평가위원)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7인 내외
- (평가기준) 서면평가 평가기준과 동일

○ 평가 기준 (신성장 동력 분야)

평가분류	평가항목	배점						
지원효과 (4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혁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이슈 해결을 위한 SW공학기술 도입의 혁신성 (참신성) - 문제 해결을 위한 SW공학기술 선정 타당성 - 수행기업 수행 목표(정량적 지표) 구성의 적절성 * 문제점, 해결과정, 수행결과 등 과제수행 전반을 적절히 지표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공학기술 적용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사례를 통한 관련 산업 파급효과 (신시장 창출, 산업 활성화) - SW공학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 - 수출판로 확보, 인증 등 준비정도 	10						
수행역량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및 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차원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련 수행 체계 확보 - SW공학기술 적용 현황 및 수행 가능 역량 확보 - 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한 팀 구성 및 지원 가능성, 지속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기간 이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 ○ 조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타당성(SP 신청 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의 충분성 - SW공학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수행방안 적절성 (교육, 도구활용 등) - 수행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 투입계획의 현실성) 	15						
사회적 가치창출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SW공학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공유·확산 수행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사례의 공유 및 확산 계획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공익, 안전, 약자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및 가능성 	5						
일자리 확대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고용의 질 개선 실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향후 고용 계획</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td>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r> </table>	고용의 질 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2	향후 고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3	
	고용의 질 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2					
향후 고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3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인증 신청(2점) ○ 직전년도 SW품질대상 수상기업(2점) ○ 직전년도 SW품질체계 지원서비스 활용기업(1점) 	5						
합 계		105						

○ 평가 기준 (시스템SW 분야)

평가분류	평가 항목	배점			
지원효과 (4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이슈의 명확성 및 개선 필요성 - 문제 해결을 위한 SW공학, SW안전기술 선정 타당성 - 수행기업 수행 목표(정량적 지표) 구성의 적절성 * 문제점, 해결과정, 수행결과 등 과제수행 전반을 적절히 지표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공학기술 적용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사례의 관련 산업계 확산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 SW공학, SW안전기술 적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 - 수출판로 확보, 인증 등 준비정도 	10			
수행역량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및 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차원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련 수행 체계 확보 - SW공학기술 적용 현황 및 수행 가능 역량 확보 - 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한 팀 구성 및 지원 가능성, 지속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기간 이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 ○ 조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타당성(SP 신청 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의 충분성 - SW공학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수행방안 적절성 (교육, 도구활용 등) - 수행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 투입계획의 현실성) 	15			
사회적 가치창출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SW안전기술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공유·확산 수행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사례의 공유 및 확산 계획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공익, 안전, 약자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및 가능성 	5			
일자리 확대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고용의 질 개선 실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td> </tr> </table>	고용의 질 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2	2
	고용의 질 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향후 고용 계획</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3</td> </tr> </table>	향후 고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3	3	
향후 고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3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인증 신청(2점) ○ 직전년도 SW품질대상 수상기업(2점) ○ 직전년도 SW품질체계 지원서비스 활용기업(1점) 	5			
합 계		105			

○ 평가 기준 (경쟁력 강화 분야)

평가분류	평가 항목	배점			
지원효과 (4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이슈의 명확성 및 개선 필요성 - 문제 해결을 위한 SW공학기술 선정 타당성 - 수행기업 수행 목표(정량적 지표) 구성의 적절성 * 문제점, 해결과정, 수행결과 등 과제수행 전반을 적절히 지표화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W공학기술 적용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 사례의 관련 산업계 확산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 SW공학기술, SW품질관리 적용에 따른 기업 경쟁력 강화 효과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진출 목표 설정 및 타당성 - 향후 글로벌 진출에 있어 본 사업의 활용성 - 수출판로 확보, 인증 등 준비정도 	10			
수행역량 (3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의 사업수행 의지 및 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차원의 사업수행 의지 및 관련 수행 체계 확보 - SW공학기술 적용 현황 및 수행 가능 역량 확보 - 사업 수행을 위한 적합한 팀 구성 및 지원 가능성, 지속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기간 이후 지속적인 유지 가능성 ○ 조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 타당성(SP 신청 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설팅 수행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컨설팅 수행계획의 충분성 - SW공학기술 도입·적용을 위한 수행방안 적절성 (교육, 도구활용 등) - 수행 전문가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 투입계획의 현실성) 	15			
사회적 가치창출 (15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SW공학, SW품질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공유·확산 수행 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사례의 공유 및 확산 계획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공익, 안전, 약자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수행 결과물을 활용한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 및 가능성 	5			
일자리 확대 (5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고용의 질 개선 실적</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2</td> </tr> </table>	고용의 질 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2	2
	고용의 질 개선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신규채용 규모와 고용유형(정규직 비율 등) 변화, 4대 보험가입률 등 ○ 기타 고용창출 실적 및 노력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0%;">향후 고용 계획</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td> <td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3</td> </tr> </table>	향후 고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3	3	
향후 고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전략 및 계획 등 	3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인증 신청(2점) ○ 직전년도 SW품질대상 수상기업(2점) ○ 직전년도 SW품질체계 지원서비스 활용기업(1점) 	5			
합 계		105			

□ 가산점 부여 기준

○ SP인증 신청기업 가산점 부여(2점)

- ※ SP인증 신청기업 가산점은 舊SW공학기술 현장적용 지원사업 기준으로 1회만 신청 가능 (단, SP 2등급 보유기업이 SP 3등급 도전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추가 신청 가능)
- ※ SP인증 가산점 신청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1차년도 사업 종료 후 18개월 이내)
- ※ SP인증 가산점 신청기업은 협약 시 SP인증 심사비용(일천만원)에 대한 이행보증 보험(기간 : 사업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8개월+60일)을 협약 시 제출해야 함
- ※ SP인증 가산점 신청기업은 SP인증심사 준비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월 월간보고서 SP인증심사에 대비한 계획과 진행현황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야 함

○ '20년도 SW품질혁신대상 수상 기업 가산점 부여(2점)

- '20년도 SW품질혁신대상 수상 기업이 본 사업 지원 시 가점 부여
 - ※ 2020년도 SW품질혁신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업

○ '20년도 SW품질체계 지원서비스 활용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1점)

- ※ NIPA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제출 (발급 관련 문의는 '문의처' 참고)

□ 종합심의 (사업비 검토·조정)

- (개요) 발표평가 결과(순위) 및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한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 (심의·조정대상)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 심의과제
-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의 발표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별 사업 범위 및 예산조정(안)을 확정된 후, 최종 지원과제 확정
 - * HW 및 SW개발 비용 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
- (심의·조정위원) 회계사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5인 내외로 구성

□ 전담 멘토링제 운영

- 공모분야별로 전담멘토를 선임하여 과제 종료 시 까지 과제별 SW공학·안전 기술 도입·적용, 내재화에 대한 자문 등 밀착(수시/정기) 멘토링(과제 추진에 따른 애로사항 해결)을 제공하는 전담 멘토링제 운영

□ 보고 및 평가

- 사업수행 보고, 현장 실사 및 평가(착수·중간보고, 최종평가)
 - 사업 착수보고,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 실시
 -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현장실사 실시
 - 최종평가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성공” 또는 “실패”로 평가

□ 성과 관리

- 수행기업은 사업 착수시점과 종료시점, 사업종료 후 5년간 SW공학 수준조사에 참여해야 함
-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 및 실행
 - 수행기업은 지금까지 수행한 고용 창출 실적과 본 사업을 수행 하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수행계획서에 제안해야 함
 - 성과 보고 시, 고용현황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 제출(컨설팅 기관도 정산대상임)

□ 관리 시스템

- NIPA SMART 시스템 (<https://smart.nipa.kr>)
 - 사업 지원, 협약, 사업 관리

□ 사업비 편성 시 유의사항

○ 민간부담금 의무기준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외에 위탁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
- 민간부담금은 의무기준 (총사업비의 25%) 이상 부담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 비율 기준은 없음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의 경우 인건비로만 계상 가능
- 재료비 성격의 비용 중 소모성 재료는 일반수용비로 산정하고, 장비(SW포함) 등은 자산취득비로 산정
 - 각 항목별로 모델, 수량, 단가, 구입처(복수 구입처 제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업계획서 내 '시설 및 장비도입 계획서' 항목)
- 자산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PC/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 구입은 지양하고 사업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 (임차료에 편성)
 - * 단, 신규인력의 PC/노트북에 한하여 자산취득비로 구입이 가능하며, 구매수량은 신규인력의 참여율 및 참여 기간에 근거하여 편성
- 운영비(특근매식비, 차량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직무수행 경비(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은 기본적으로 편성 불가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하여 각 비목별 편성한도는 없음
-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의 특성 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 협의를 통하여 배정
-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시스템/서비스 등 모든 거래 불가

- 과제평가위원회 또는 사업비검토·조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최종 사업비(정부출연금 등)는 축소·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함
- 모든 사업비는 1차년도 기준으로 먼저 산정하며, 2차년도 사업비는 1차년도 사업비와 동일하게 산정

※ 전산접수 시 SMART 시스템에 입력하는 모든 예산은 1차년도 예산으로만 작성 (예산 입력 시 금액 단위에 주의)

- 1차년도 사업비 : 기관별/비목별/현금·현물별 세부내용 작성
- 2차년도 사업비 : 세부내용 작성 불필요, 사업계획서 양식에 의거 기관별/비목별 총계만 작성

* 2차년도 사업비 세부내용은 2차년도 계속지원 과제에 한해 작성

□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민간부담금 중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정부출연금을 입금하며,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모든 위탁기관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를 별도의 계좌로 관리 (* 통장 사본은 최종 선정된 기관만 추후 제출)

* 사업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해야 하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소요금액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비교견적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위탁기관이 타기업·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장비 구입 포함), 계약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함

□ 협약체결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선정 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약 체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협약 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은 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 기 타

○ 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이며, 수행기업은 해당 기간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후속조치 관련하여 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

○ 제출 서류 및 제출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사업 신청기업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